

계약직 직원의 연봉제 직원 전환 임용 규정

공포 제2025- 11호(개정 2026. 2. 13.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계약직 직원의 연봉제 직원 전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트랙전환) ① 총장은 학교의 재정 건전성, 대학발전 기여도, 직원근무업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정규직 직원(연봉제)으로의 전환 필요 인원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청한다.

② 계약직 직원으로서 정규직 직원(연봉제) 전환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.

1. 근무기간 요건 (개정 2026.2.13.)

가. 기술직:최초 임용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

나. 일반직:최초 임용 후 1년 이상 근무한 사람

2. 근무실적 요건(트랙전환 임용일 기준으로 최근 직원근무업적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람) (개정 2026.2.13.)

가. 기술직:최근 6개월 평가결과

나. 일반직:최근 1년 평가결과

3. 기타 교육 및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탁월한 사람

제3조(트랙전환의 제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트랙전환 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 징계의결, 징계처분, 직위해제 또는 휴직(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)중인 사람

2.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가. 정직 : 18월

나. 감봉 : 12월

다. 견책 : 6월

제4조(트랙전환임용 후 처우) ① 계약직 직원이 정규직 직원(연봉제)으로 트랙전환을 한 경우, 현재 직급을 유지하며 정규직 직원(호봉제)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갖는다.

② 정규직 직원(연봉제)으로서의 연봉은 계약으로 정한다.

③ 정규직 트랙전환 후 승진 임용 등은 직원인사규정 등에서 정해진 바에 따른다.

제5조(보칙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직원인사 및 복무, 업적평가 관련 제규정을 준용하며,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